금융위원회	보 도 자 료			
	보도	2018.3.29.(목) 조간	배포	2018.3.28.(수)

책 임 자	금융위 감사담당관 김대현(02-2100-2790)	담 당 자	전 희 규 사무관 (02-2100-2791)
	금감원 인적자원개발실장 장준경(02-3145-5470)		김 충 진 팀장 (02-3145-5480)

제 목 : 금융위 공무원·금감원 임직원, 금융행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외부인과 접촉 투명하게 관리한다.

-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제정·시행 -

◇ 주요내용 ◇

□ **(적용원칙)**

- 사무처리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**외부인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**
-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발전 등을 위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시장과의 소통 등이 필요한 **금융위/금감원 업무의 특성 고려**
- **금융행정 이해관계자**의 정보접근 편의와 소명권 보장 등 수요자의 **입장도 고려**

□ **(주요내용)**

- (보고대상사무) 금융기관 검사·제재, 인·허가,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, 회계감리
- (외부인 유형) 변호사·회계사, 금융기관·주권상장법인 임직원, 금융위·금감원 퇴직자중 보고대상 사무 담당자

□ **(시행일)**

- 4월17일부터 시범운영 후, 5월1일부터 시행

1 추진 배경

□ 최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('16.9월 제정)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'외부인 접촉관리 규정' 시행 등으로 공공부문의 투명성 제고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

○ 지난 '17.12월 **금융행정혁신위원회**는 금융행정의 특성을 감안하여 금융당국 소속 공직자의 외부 이해관계자 접촉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권고

◇ **금융행정혁신위 권고안**('17.12.20) ◇

- 금융부문의 경우 시장과 긴밀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접근
- 다만, 금융위나 금감원 등 금융당국도 이해관계자와의 불필요한 접촉 등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

※ 공정위는 소속 공무원이 퇴직자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외부인과 접촉할 경우 보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제정·시행('18.1.1)

□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**금융행정의 공정성·투명성 제고**를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등(이하 '공무원등'이라 한다)이 준수해야 할 **'외부인 접촉관리 규정'**(금융위원회 훈령/금융감독원 규정)을 마련

○ 동 규정은 사무처리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**외부인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**하고

○ 시장안정 유지 및 금융산업 발전, 기업구조조정 등 **다양한 업무를 수행**하고 있는 **금융당국 업무의 특성을 고려**하며

○ 금융행정 이해관계자 및 수요자의 **정보접근 편의와 소명권 보장 등**을 충분히 감안하여 마련하였음

2 주요 내용

1 **(보고대상 사무)** 금융위설치법에 규정된 사무 중 외부 시각에서 투명성 요구가 강한 ① **검사·제재, ② 인·허가, ③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, ④회계감리 업무와 관련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업무**를 처리하는 경우 보고대상 사무에 해당

○ 다만, 금융행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**금융시장 안정** 및 **금융산업 발전**을 위한 **시장모니터링, 신속한 대응 조치** 등이 필요한 경우는 보고대상 사무에서 제외하였음

2 **(접촉보고 의무)**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는 금융위 및 금감원 출신 퇴직자 등 **4개 유형의 외부인과 접촉***하는 공무원등은 접촉내역을 5일이내 감사담당관/감찰실 국장에게 **보고**하여야 함

◇ 4개 유형 보고대상 외부인 ◇

- **(법무법인 변호사 등)** 공직자윤리법상 **취업심사대상 법무·회계법인*** **소속 변호사·회계사 등** 법률·회계 전문가 중 보고대상 사무 담당 또는 경력자
  *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법무법인 등(총 31개), 회계법인(총 39개)이 대상임 (2017년말 공직자윤리위원회 고시 기준)
- **(금융기관 임직원) 금융기관***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보고대상 사무 담당자
  * 은행 57(외은지점 포함), 생보 27, 손보 31, 증권사 56, 자산운용사 169, 자문사 175, 부동산 신탁사 11, 저축은행 79, 상호금융 2,258, 여신전문업자 82 등(2017년 기준)
- **(기업체 임직원)** 자본시장법상 **주권상장법인*** 소속으로 보고대상 사무 담당자
  * 약 2,191개 회사(2017년 지정 기준)
- **(금융위/원 퇴직자)** 금융위(원) 퇴직자 중 상기 **법무법인·금융기관·기업체에 재취업**한 보고대상 사무 담당자

○ **(보고 제외사유) 사회상규상 허용**되는 접촉, **관계법령 등에서 허용된 절차에 따른 접촉** 등은 보고대상에서 제외함

◇ 접촉 보고 제외 사유 ◇

-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경조사, 토론회, 세미나, 교육프로그램 참석 등
- 출입기록 확인, 녹음 등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된 환경에서 접촉
- 관계 법령, 관련 공문 등에서 허용된 절차에 따른 접촉
- 인·허가 진행상황 문의 또는 인·허가 업무를 위해 접촉예정 외부인 명단을 사전에 제출한 후 접촉
- 등록·신고·보고 관련접촉
- 공직유관단체 및 금융협회 임직원과 접촉(검사·제재 대상인 경우는 제외)
- 공직 이메일이나 사무실 전화 통화
- 휴대전화 등 통화시 지체없이 통화를 종료한 비대면 접촉

3 **(접촉 중단 사유)** 보고대상 외부인이 보고대상 사무처리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보 입수 시도 행위 등 **8가지 유형의 행위**를 하는 경우, 공무원등은 **즉각 접촉을 중단**하고 관련 사실을 감사담당관/감찰실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

◇ 외부인 접촉 중단 사유 8가지 ◇

- 보고대상 업체, 협의 내용 등 사무처리개시 전 외부에 공개될 경우 사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입수행위
- 보고대상 사무관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을 초래할 정보입수 행위
- 금융위원회 회의 등 내부검토 의견등 회의의 공정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정보
- 의견청취절차 등 공식적인 절차 이외의 방식으로 사무처리 방향 변경 등 청탁행위
- 검사·제재,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, 회계감리 처리시기의 조정관련 청탁행위
- 보고대상 사무처리 방해 행위
- 청탁방지법에 규정된 수수금지 금품 등 제공 등 행위
- 그 밖에 보고대상 사무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 등이 있는 행위

4 **(접촉 제한)** 접촉 중단 행위를 한 것으로 **확인된 외부인***과는 금융위원장/금융감독원장이 공무원등에게 **1년이내 접촉을 하지 않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**

* 접촉이 제한된 외부인 명단은 금융위와 금감원간 정보를 공유하여 동일한 수준의 규제 적용

○ 외부인의 접촉 중단 행위 여부를 확인하고, 접촉 제한 조치를 건의하기 위해 **접촉심사위원회를 설치(위원장 : 사무처장/ 부원장보),**

* 접촉심사위원회 구성 : 위원장 포함 총 5인(공무원등이 아닌 외부위원 2인 포함)

○ **접촉 제한 조치의 신중한 운영**을 위해 의견청취 절차 및 접촉심사위원회의 **심사 기준**도 마련하였음

5 (**징계 조치**) **보고의무나 접촉 제한 의무를 위반**한 공무원등에 대해서 **징계 등의 조치 근거를 마련하였음**

3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

□ (**향후 계획**) 4월 17일*부터 **2주간 시범 운영** 후, 미비점을 보완하여 **5월 1일부터 정식 시행**

* 「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」 개정(안) 시행 예정일

□ (**기대 효과**) 외부인 접촉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금융행정의 **공정성과 신뢰성이 제고**

○ 금융당국과 금융행정 수요자간의 불필요한 접촉을 방지함으로써 **건전한 소통문화가 정착**될 것으로 판단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http://www.fsc.go.kr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